

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(제9조제1항 관련)

1. 산림욕장시설의 종류

구분	시설의 종류
가. 편익시설	임도·전망대·야외탁자·데크로드·야외쉼터·야외공연장·대피소·주차장·방문자안내소 등
나. 위생시설	오물처리장·화장실·음수대·오수정화시설 등
다. 체험·교육 시설	산책로·탐방로·등산로·자연관찰원·목공예실·생태공예실·숲속교실·곤충원·식물원·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
라. 체육시설	철봉·평행봉·그네·배드민턴장·족구장·어린이놀이터·물놀이장·운동장·다목적잔디구장 등
마. 전기·통신 시설	전기시설·전화시설·휴대전화중계기·방송음향시설 등
바. 안전시설	울타리·화재감시카메라·화재경보기·재해경보기·보안등·재해예방시설·사방댐 등

2. 산림욕장시설의 설치기준

구분	설치기준
가. 편익시설	1) 경사가 완만한 산림을 대상으로 할 것 2) 산책로·의자·간이쉼터 등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
나. 위생시설	1)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시설할 것 2)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3) 식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4)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
다. 체험·교육시설	1) 산책로·탐방로·등산로 등 숲길은 폭을 1미터 50센티미터 이하(안전·대피를 위한 장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)로 하되, 접근성·안전성·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림형질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)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

[비고]

-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.
- 산림청장은 제2호의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해당 산림상태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.